
입 법 정 보

2018-6호



목 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7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8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8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9
9.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9
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0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2
1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5
15.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16
16.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6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8
2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3.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4.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5.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보건복지부).....	21
2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2
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4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7
3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3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9
33.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0

3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30
3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1
3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1
37.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32
3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3
39.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3
40.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4
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34
43.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35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6
4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8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8
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39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0
5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1
5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41
5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42
5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3
5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4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5
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5
6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46
6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46
6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48
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50
6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51
6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2
66.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2
6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
6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
6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55
7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5
7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6
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7

정부입법 예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신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4제2항 개정)
 -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 나.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8조 개정)
 -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허가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 작성 내실화 (안 제13조제3항 개정)

-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은 허가권자가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바로 작성·관리 하는 것을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기재 관리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분화(안 제16조제1항 제2호 개정)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 하기 위해 건축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 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마.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안 제40조제1항 삭제)

- 건축법 개정(제13785호 ' 17.1.19)으로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을 정비함.

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별 전유부 확인 강화(안 별지 제21호, 제24호 서식 개정)

-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사. 법령개정 등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등 29종 개정)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행정조직의 변경 또는 건축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하위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함.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규정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행위

별로 구분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명시

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안 제15조)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바. 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사.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자.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안 별표1)

-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체계를 보완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7조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7조 제4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5조제3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조의2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9.
- 마감일자 : 2018. 4. 30.

-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조의2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7.11.28)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주도 혁신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판로확대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 2)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지원
-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4) 민간부문의 능동적·자율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분야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9.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3. 26.

○ ‘18년 소요정원, 정부혁신 기능 정비, 신설조직 성과평가 관련 규정 정비, 총액인건비제 개선, 일부업무 조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소년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가7, 12, 13 병합, 2018. 1. 25.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60조 제4항)

1) 제60조제4항 중 오탈자인 관찰 검찰청을 ‘관할 검찰청’ 으로 수정
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 정비(안 제67조)

- 1) 현행 「소년법」 제67조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실형보다 경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 2)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 3)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것과 차이가 없고, 각 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 4) 다만, 선고·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
- 5) 선고·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 또는 취소 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용 대상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구성·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기재사항 추가(안 제13 조제1항)

- 1)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 방법,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및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2)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가동 사유, 최고경영자의 금융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감사담당 직원의 신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조정(안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

- 1) 보수위원회의 보수심의 대상 임원의 범위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하며,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 제1항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 1)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임원 자격 결격기간이 형(刑)의 경중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刑)의 경중과 임원 자격의 결격기간이 상응할 수 있도록 실형 · 실형의 집행유예 · 실형의 선고유예, 벌금 등 형의 종류별로 임원 자격의 결격기간을 재조정함

나.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재선임되고자 하는자는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1) 금융회사의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업무집행책임자 모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해야 해 금융회사에 과도한 인사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집행책임자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면 되도록 의무를 완화함

라.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안 제12조제4항 · 제5항)

- 1)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일이 일시에 도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이사후보의 추천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함

마.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 제2항 · 제6항)

- 1) 금융회사의 주요 등기임원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함

바.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 · 제11항 · 제12항, 제20조제1항 · 제3항 · 제5항)

-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감사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함
- 2) 감사위원이 감사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이사회내 다른 업무에 종사함이 없이 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내 다른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3)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하여 보장하도록 함

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 (안 제22조제2항 · 제5항 · 제6항)

- 1)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의 개별보수 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3) 자산총액 일정액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매 3년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
· 제27조제2항)

- 1)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
실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에게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 · 제5항 · 제7항)

-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인
개인 1인’ 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주요주주 중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로 확대함
- 2)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을 추가함
- 3) 적격성 심사대상이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에 불응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보유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사학기관의 소유한 교육
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감가 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결과 보고 방법 및 시기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학기관의
적립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적립 투자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제5항 신설)
- 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산정 기준은 당해 연도 교비회계에 속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34조제5항 개정)
- 다. 결산 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로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 제1항제8의3호 및 별지 제4호의7 서식 신설)

1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교육부장관이 감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31조의2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사학기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기관의 자격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며, 사학 기관 적립금 투자 관리·자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 투자 관리·자산 운용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학기관의 설립자, 학교의 장, 임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투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사학기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 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라.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는 기금운영 계획,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 기금운용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4제6항 내지 제10항 신설)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수행한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감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교육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수행 가능하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의3 신설)

- 예고일자 : 2018. 3. 20.
- 마감일자 : 2018. 4. 30.

○ 현행 법령이 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별 입학전형료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입학전형료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구체화(안 제3조)
- 다.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안 제4조)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

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시기·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의5 신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5. 1.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가능 조항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1)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정함
- 지정기준 : ①비영리법인, ②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수행, ③전담조직 및 인력, ④최근 3년간 수행실적 有
- 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안 제33조의 1)
-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정, 업무해태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 지정취소 기준 : ①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②지정기준 미달, ③3개월 이상 업무해태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12.
-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적용('18.5.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 주요내용
- 가.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5]에 정비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
 - 1)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

다.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

- 1)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

-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안 제17조)

- 1) 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

바.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18)

- 1)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

- 1)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 1)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 1)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23.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4.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1. • 마감일자 : 2018. 4. 30.
-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항공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2)
 -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3)
 - 다.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추가 (안 제55조 제1항 제40호)
 - 라. 이착륙장 준공확인 위반 자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마련 (별표3 가목)

25.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3. 27.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에 대해 세

부적으로 규정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5. 1.

- 기술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징수 대상인 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2)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요건 규정 등 마련
(안 제46조의4)

- 1)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내 관련 근거 부재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문화산업전문 회사를 설립 후 별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공모문화 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 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3. 29.

○ 주요내용

- 가.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4. 9.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과 단지별 설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 나.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 1)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 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 제2항 신설)
 - 1) 공공주택사업자는 시 군 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5. 1.
-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인·기업·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 보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산업 전체를 균형있게 육성하지 못했으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위주의 발전정책에 한정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산업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안전, 소프트웨어문화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 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마.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가치를 보장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 바.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창업공간 제공의 한정된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소프트웨어기술 금융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
- 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자.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타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와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차. 소프트웨어가 국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및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카.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45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 촉진과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일부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

거. 정부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 공시의무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요청 및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52조)

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 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 머. 국가기관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범위를 심의·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심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1조)
- 버.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분석·설계하는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안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66조)
- 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8조)
- 저.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80조까지)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22.
- 마감일자 : 2018. 3. 3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영에 일부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 이를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처럼 과태료 부과 시

고려요소를 ‘위반행위의 횟수(과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며, 그 고려요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4. 12.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도 추가
 -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도록 조정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 완료보고서 제출
 - 라.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 기준으로 조정

마.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분기말 수질검사 실효현상을 방지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3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3.

-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특례를 규정한 「항만법」 개정·시행(법률 제14452호, 16.12.20.공포, 17.6.21.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항만 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검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특례(안 제14조의2)

- 1)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 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항)
- 2)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이외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4항, 별표2, 제5항)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제2조)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 및 1년(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에 대비토록 함

33.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조사주기나 조사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기본적 사항 규정(안 제15조의 신설)
 -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3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3.
-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여 실시토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3호, 2017.12.12. 공포,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1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 일부개정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내용 포함(시행규칙 제1조의2)
 - 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관한 사항에 국내결혼중개업 포함(시행규칙 제6조의2)
 - 다. 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3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탁등록 신청 및 전자파일등록증 신청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선순위 질권 기재 조항 삭제와 질권 변경내용의 직권 등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

3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항 표기방법 개선과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탁등록 동시신청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록 표기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제3항)

-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의 이전과 처분제한 등은 주(主)등록이

아닌 부기(附記)등록함

나.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 개선(안 제14조 제5항·제7항)

-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와 말소된 권리의 직권회복 등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추가함

다. 신탁등록 신청 절차 보완(안 제53조 제1항)

-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제27조의 신탁 재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과 ‘신탁등록’ 의 동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정비함

37.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4. 23.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안 제2조)

-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2)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 범위 규정 (안 제2조제2항, 제3항)

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다. 지자체장의 아동수당 지급방법 변경 (안 제9조)

- 1) 지자체장은 유가증권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수급아동이 양육시설등에서 보호되고 있어 아동수당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2)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전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라.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안 제12조)

1)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보호자의 교정 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현재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사유로 규정
마.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안 제17조)

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의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 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3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으로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임용 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편, 6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급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 도입(안 제3조)

-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안 제5조)

- 특별승진임용 가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

39.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도 포함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에 이전허가 내용도 포함시켜 서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명시하고 자료제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거부·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40.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23.

● 마감일자 : 2018. 5. 2.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규제조치 마련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제1항)

나.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4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26.

● 마감일자 : 2018. 5. 8.

○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8조 제4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4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27.

• 마감일자 : 2018. 5. 8.

○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기준(안 제2조)

- 1)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수산물의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로 함
- 2) 보상금 산정 기준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나.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지급신청(안 제9조)

- 1)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청구권 증명 자료 대상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43.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3. 27.

• 마감일자 : 2018. 4. 3.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27.
- 마감일자 : 2018. 5. 8.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신설을 통해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법률이 일부 개정됨. 이에 따라 추가된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행사의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나.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제6항 개정)

4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7.
- 마감일자 : 2018. 5. 8.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4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27.
- 마감일자 : 2018. 5. 8.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119조의3)
 -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 ~ 5, 제46조제2항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차종·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의무비율을 확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차종에 대해 구매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 ~ 5, 제46조제2항 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수행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위임사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함.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 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안 제35조)

1) 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의 신청 등 품질인증 관련 조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 문구 삭제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7,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1) 품질인증 표시, 품질인증서, 신청서 등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 문구 삭제.

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도록 완화하고,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40조의3 제1항)

1)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안 제40조의4제3항 제1호)

1)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68호, 2015. 2. 27. 제정,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 세부 항목으로 추가함.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별표 3 제1호 개정)

- 1) 청소년수련시설 중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등에 대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 허용

5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8.

• 마감일자 : 2018. 5. 8.

-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 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1)

- 1)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법률 용어 순화 (안 별지 제12호서식)

1)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5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29.

• 마감일자 : 2018. 5. 8.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9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기준 마련(안 제29조 제3항)

1)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 제3항제1호)

2) 오염된 하천·호소의 선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 행정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 제3항제2호)

3) 필요한 조치를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본문)

5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9.

• 마감일자 : 2018. 5. 8.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

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담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

5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9.
- 마감일자 : 2018. 5. 8.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지급기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비의 범위 및 재난적의료비의 의미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함.
- 2) 재난적의료비는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또는 입원비용과 외래 진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

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1)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2)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원대상자 및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등 구체화(안 제7조 및 제8조)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 2) 외래진료 비용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라.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11조)

- 1)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2) 지원금액은 입원과 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부당이득금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결손처분 사유, 제공요청 및 제출요구 자료의 종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12조~제22조)

5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29.

● 마감일자 : 2018. 5. 8.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5442호, 2018. 3. 13. 공포, 2018. 6. 12. 시행)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 관리 등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이나,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

○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 1)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5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3. 29.

● 마감일자 : 2018. 5. 8.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갇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갇생보호회에 대하여 동일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에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갇생보호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 1)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갇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위반 횟수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3)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11.
-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안 제7조)
 -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안 별표 1)
 - 1)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껴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자담배 정의에 껴련형을 신설
 - 1)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껴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 나.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 1)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6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에 따른 서식 정비
 - 1)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 2)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3)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4)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6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육 해 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 해 공군 현역병 지원서 서식 통합(안 제23조)

- 육 해 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별지 제25호서식)

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제출서류 개선(안 제79조)

-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다.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1)

-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반영

라. 귀가증에 입영신체검사 귀가사유 명시(안 별지 제22호서식)

-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가사유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귀가증 서식에 귀가사유에 관한 설명 등을 추가

마.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안 별지 제108호서식)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외

바.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안 별지 제116호서식)

- 병무용 학력증명서 기재 내용 중 병역처분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종합성적’ 기록 항목 삭제

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등 개선

-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31호의3서식)
-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2호서식)
-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4호서식)
-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8호서식)
- 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서식 개선 (안 별지 제76호서식)
- 6)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77호서식)

6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서의 원칙적 송달기한(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7일 전)을 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에 모바일 앱에 의한 송달을 추가하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병역의무를 편법으로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 연기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안 제3조의3)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9조, 제21조 등)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7일 전)을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등 각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함.

다. 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위탁 근거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14조의2)

- 병역법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및 정밀심리검사 민간 의료기관 위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검사 규정에 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라. 현역병 선발취소 사유 병무청장 위임 근거 마련(안 제29조)

- 「현역병모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에서 현역병 모집 선발취소 사유를 ‘시행령 제29조제6항의 질병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병무청장에게 선발취소 사유를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함.

마.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개선(안 제40조의4, 제40조의6)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중 승선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

바. 사회복지요원 복무분야(장애학생 활동지원) 확대(안 제47조, 47조의3)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복무분야에 ‘유치원 장애유아활동 지원’분야를 각각 추가하여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함.

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추가(안 제85조)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안전상 문제 발생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안 제118조의4, 제119조)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수능성적과 예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의장교 수학(修學) 능력과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수의장교 수학 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본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함.

자.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제외 근거 마련(안 제119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 및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입영연기 제도 개선(안 제128조, 제129조)

- 단기 출국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입대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재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2년)에 산입하고, 입영일자 연기 사유 별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함.

카. 사회복지요원 장기 소집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 단축(안제135조)

- 2015년 이후 사회복지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되어 의무부과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3년 이상 → 2년 이상)하여 소집 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함.

타.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 개선(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 ‘재외국민 2세’가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되나, 이를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199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도록 재외 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개선함.

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

-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다.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

-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

6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추었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처리규정(안 제41조의10)

- 품질인증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제1호의4)

6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4. 4.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별지 제63호서식)에 개정내용을 반영함.

66.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4. 9
-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등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 나.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6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지역 IC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별 ICT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의 지역 ICT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진흥기관의 지정 및 사업내용, 지원범위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강화(안 제14조의2)
- 다.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 통일
 -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수요예보, 계약현황 조사의 대상기관을 소프트웨어사업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안 제28조, 제29조)
- 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 공공조달의 공정경쟁환경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등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 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분야 주요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42조)

6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공인인증서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민원행정,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자서명시장이 성숙된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없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폐지함(안 제2조)
- 나.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 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안 제8조)
- 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를 보호함(안 제14조)
- 아.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전자서명수단의

제한을 엄격히 통제함(안 제18조)

자.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신뢰를 보호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6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7.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표지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현행 규정 상 별도의 자격 규정이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 1) 현행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7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잔재물에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 명확화

- 1)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어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
- 2)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시 발생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 1) 일본 등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인뿔은 폐질환 등의 발생원인 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작업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
- 2) 인뿔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함

다. 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승강기 및 리프트)의 개념이 유사함에도 용어, 정의 등의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 2)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에 관한 일반법인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라.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 1)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까지의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이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생산함으로써 추가 비용 발생

- 2)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국제기준 ISO 기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3. 30.
- 마감일자 : 2018. 5. 9.

-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에서 노동자 또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석면 노출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완료 후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산재은폐 문제 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재해율로 산정하고 있어 그간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 유인이 많았고,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 2)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하되,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는 포함하고, 원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함
- 3)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기준을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로 전환함으로써,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입찰 시 가점과 관련된 업체 간 형평성 결여 문제 해소 기대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

-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측의 시각은 배제되는 문제 발생

- 2)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 사업주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금액 3억 미만과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민간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2) 또한 건설공사는 외부환경 및 공정진척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월 1회 기술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 따라서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최소기준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 축소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지도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 확보

라.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 정비

- 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2) 유해·위험기계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원 교육과정에 해당 기계에 대한 교육과정 포함하도록 함

마.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 정비

- 1)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으로는 학교 또는 재건축 현장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신고서 수리 전 현장실사(일정면적 이상의 학교 등) 등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 2)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수리 전 누락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거나 작업완료 후 석면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강화
- 2) 석면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